

|   |  |
|---|--|
| <p>員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.</p> <p>이상으로 審查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/p> <p>○議長 白昌鉉 趵石萬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.</p> <p>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審查報告한 서울特別市會計關係公務員財政保證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檢印契約書制度實施에 따른市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, 그리고 서울特別市住宅建設에對한市稅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, 서울特別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直型自動車에對한自動車稅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案, 그리고 서울特別市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, 그리고 '94市有財產管理計劃同意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.</p> <p>議員님 여러분, 異議 없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</p> <p>異議 없으시면 이상 7件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회계판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<br/>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회계판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제3호중 “제96조”를 “제123조”로 한다.</p> <p>제3조제1항 제1호중 “지하철건설본부” 다음에 “청소사업본부”를 삽입하고, 동조동항중 “제3호”를 “제4호”로, “제2호”를 “제3호”로 하며, “제2호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2. 시의회사무처 : 사무처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<br/>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</p> | <p>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부칙 제1항중 “1994년 1월 1일부터”를 “공포한 날부터”로, 부칙 제2항중 “취득하였거나,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”을“ 이미 취득하여 검인신청한 계약서에 의한 취득세와 이미 등기신청한 계약서에 의한 등록세는”으로 수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<br/>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 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1조증 “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의 시행에”를 “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”으로 한다.</p> <p>제2조증 “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”을 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”으로 한다.</p> <p>제3조증 “100분의 40”을 “100분의 30”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적용예)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이미 취득하여 검인신청한 계약서에 의한 취득세와 이미 등기신청한 계약서에 의한 등록세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<br/>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 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제1항 단서중 “준공검사일”을 “사용검사일”로, “임대주택을 준공한 후”를 “임대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”로, “양도하거나”를 “양도(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사원용임대주택을 건</p> |
|---|--|

|  |  |
|--|--|
| <p>설하여 고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하거나”로 한다.</p> <p>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고용자가 사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사원용임대주택을 양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시행기간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제2항제8호중 “마권세”를 “경주·마권세”로 한다.</p> <p>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5항중 “중기”를 각각 “건설기계”로 한다.</p> <p>제22조를 삭제한다.</p> <p>제27조제2항중 “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”을 “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”으로 한다.</p> <p>제8절의 제목 “마권세”를 “경주·마권세”로 한다.</p> <p>제49조제1항중 “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”을 “납세의무자는 경주종료일”로 하고 “마권세액”을 “경주·마권세액”으로 하며, 동조제3항중 “한국마사회에”를 “납세의무자에게”로 한다.</p> <p>제50조본문중 “한국마사회”를 “납세의무자”로 하고, “경마”를 각각 “경주”로 하며,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1.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경주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</p> | <p>2. 법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경주·마권세액</p> <p>3.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의 경주투표 적중수</p> <p>4. 경주투표의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유</p> <p>제51조본문중 “한국마사회”를 “납세의무자”로 하고,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1.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경주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</p> <p>2.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경주투표 적중수</p> <p>3. 경주투표의 적중자가 없을 경우에 있어서 그 경주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</p> <p>제52조증 “한국마사회”를 “납세의무자”로 하고 “마권세액”을 “경주·마권세액”으로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짚형자동차에대한 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(이하 “짚형자동차”라 한다)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불균일과세)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.</p> |
|--|--|